



기업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준수 체크리스트 및 처벌 위험

시행령 330/2026/ND-CP에 따라 업데이트 · 2026년 8월 19일부터 시행

54개 의무 · 3개 부

개인정보보호법 제91/2025/QH15호 · 시행령 356/2025/ND-CP · 시행령 330/2026/ND-CP

목차

01	제1부. 베트남 국가기관에 대한 준수 의무	4
02	제2부. 내부 준수 의무	13
03	제3부. 타 당사자와의 거래에서의 준수 의무	25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3가지 최고 과태료 상한

부당이득의 10배

개인정보 매매 행위

최고 과태료는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의 10배이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그 산정액이 30억 동 미만인 경우 30억 동을 적용한다.

시행령 330/2026/NĐ-CP 제7.4.a조

매출의 5%

국경 간 개인정보 이전 규정 위반

최고 과태료는 베트남 시장에서의 직전 연도 매출의 5%이며, 국경 간 데이터 이전 활동을 6~12개월간 정지시킨다.

시행령 330/2026/NĐ-CP 제7.4.b조 및 제56.3조, 제56.5.b조

30억 동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기타 위반행위

최고 과태료는 30억 동이다. 이 상한은 조직에 적용되며,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개인의 경우 최고 과태료는 그 금액의 2분의 1이다.

시행령 330/2026/NĐ-CP 제7.4.c조 및 제7.4.d조

개인정보 처리 영향평가 서류

번호	준수 의무	법적 근거	시행령 330/2026/ND-CP에 따른 처벌 위험
1	- 적용 대상: 개인정보 관리자, 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자, 개인정보 처리자. - 관할 기관: 개인정보 보호 전담기관(사이버보안 및 첨단기술범죄 예방국(A05)). - 이행 사항: 개인정보 관리자, 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자는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i) 개인정보 처리 영향평가 서류를 작성·보관하고, 개인정보 보호 전담기관의 점검·평가에 대비하여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도록 유지할 것; 그리고 (ii) 최초 개인정보 처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영향평가 서류 원본 1부를 개인정보 보호 전담기관에 제출할 것. - 처리 기한: 15일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 제21.1조; 시행령 356 제19.4조 및 제19.5조	개인정보 처리를 개시하면서 영향평가 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본사에 보관하지 않은 경우, 또는 최초 개인정보 처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본 1부를 A05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00만~3,000만 동외 과태료가 부과된다(제55.1.a조 및 제55.1.b조). 시정조치: 서류의 작성·보완·제출을 강제하며, 서류가 완전히 제출되어 전담기관의 확인을 받을 때까지 개인정보 처리 활동의 중단을 강제한다(제55.3.a조 및 제55.3.b조).

개인정보 처리 영향평가 서류 (계속)

번호	준수 의무	법적 근거	시행령 330/2026/ND-CP에 따른 처벌 위험
2	영향평가 서류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조직의 개인정보 처리 영향평가 서류 제출 통지서(서식 제02a호) b) 시행령 356 서식 제10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영향평가 보고서; c)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계약서 또는 합의서 사본으로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된 조직·개인 간의 구속력 있는 의무와 책임을 나타내는 것; d) 개인정보 관리자, 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자,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절차, 규정, 서식 및 기타 관련 문서.	시행령 356 제19.1조 및 제19.4조	서류가 미비하거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담기관의 보완 요청에도 고의로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2,000만~3,000만 동외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55.1.c조). 고의로 자료를 위조하거나 서류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A05국의 서면 시정 요청을 거부한 경우 5,000만~1억 동외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55.2조).
3	다음의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영향평가 서류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a) 개인정보 이전 또는 처리의 새로운 목적이 발생하는 경우; b) 개인정보 관리자, 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자, 개인정보 처리자, 제3자가 새로 발생하거나 변경되는 경우.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 제22.1조 시행령 356 제20.1조	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이 있음에도 6개월마다 영향평가 서류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경우 2,000만~3,000만 동외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55.1.d조). 시정조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작성·보완·제출하고 관할 기관에 증빙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제한다(제55.3.a조).

개인정보 처리 영향평가 서류 (계속)

번호	준수 의무	법적 근거	시행령 330/2026/NĐ-CP에 따른 처벌 위험
4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즉시 영향평가 서류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a) 회사가 법령에 따라 재편, 영업 중단, 해산, 파산하는 경우; b)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개인에 관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c) 개인정보 처리 영향평가 서류 또는 국경 간 개인정보 이전 영향평가 서류에 등록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종·직종·서비스가 새로 발생하거나 변경되는 경우.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 제22.2조, 시행령 356 제 20.2조	즉시 업데이트가 필요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10일 이내에 서류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경우 2,000만~3,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55.1.d조). 시정조치: 서류의 작성·보완·제출을 강제하며 관할 기관에 증빙자료를 제공한다(제 55.3.a조).

국경 간 개인정보 이전 서류

번호	준수 의무	법적 근거	시행령 330/2026/ND-CP에 따른 처벌 위험
5	회사는 국경 간 개인정보 이전 서류를 작성하고, 최초 국경 간 개인정보 이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본 1부를 개인정보 보호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처리 기한: 15일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 제20.2조 시행령 356 제18.5조	이전 전 또는 이전 중에 국경 간 개인정보 이전 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최초 이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본 1부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3,000만~5,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56.1.a조 및 제56.1.b조). 가중 처벌: 영향평가 서류 없이 국경 간 개인정보를 이전하거나, 데이터 흐름을 은닉·허위 신고하여 개인정보의 유출·손실을 초래한 경우, 베트남 시장에서의 직전 회계연도 매출 비율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구체적으로 베트남 국민인 정보주체 10,000명 이상 100,000명 미만의 유출·손실 시 1~2%, 100,000명 이상 1,000,000명 미만 시 2~3%, 1,000,000명 이상 시 3~5%이다(제56.3조). 베트남 내 매출이 없거나 매출 기준 산정액이 더 낮은 경우 2억~30억 동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제56.4조). 부가 제재: 국경 간 개인정보 이전 활동을 6~12개월간 정지한다(제56.5.b조). 시정조치: 서류의 작성·보완·제출을 강제하며, 서류 의무가 완료되어 전담기관의 확인을 받을 때까지 데이터 이전의 중단을 강제하고, 수령자에게 위법하게 이전된 데이터의 폐기·삭제를 요구하고 그 증빙을 제공하도록 강제한다(제56.6조).

국경 간 개인정보 이전 서류 (계속)

번호	준수 의무	법적 근거	시행령 330/2026/ND-CP에 따른 처벌 위험
6	서류 구성: a) 조직의 국경 간 개인정보 이전 영향평가 서류 제출 통지서(서식 제01a호) b) 시행령 356 서식 제09호에 따른 국경 간 개인정보 이전 영향평가 보고서; c) 국경 간 개인정보를 이전·수령하는 조직·개인 간의 구속력 있는 의무와 책임을 나타내는 계약서 또는 이전 문서 사본; d) 국경 간 개인정보 이전 활동을 수행하는 주체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절차, 규정, 서식 및 기타 관련 문서.	시행령 356 제18.2조	전담기관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경 간 개인정보 이전 영향평가 서류를 완비하지 않은 경우 3,000만~5,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56.1.c조). 시정조치: 규정에 따라 서류의 작성·보완·제출을 강제한다(제56.6.a조).

국경 간 개인정보 이전 서류 (계속)

번호	준수 의무	법적 근거	시행령 330/2026/ND-CP에 따른 처벌 위험
7	국경 간 개인정보 이전 서류 작성·제출이 면제되는 경우: a) 관할 국가기관의 국경 간 개인정보 이전; b) 기관·조직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통해 자체 소속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c)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직접 국경 간 이전하는 경우; d) 법령이 정하는 기타 경우.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 제20.6조	이는 의무 면제 사유이므로 직접적인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2025년 개인정보보호법 제20.6조). 유의사항: 스스로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기업이라도 전담기관의 점검 시 그 근거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면제 대상이 아님에도 서류를 작성·제출하지 않은 경우 3,000만~5,000만 동 of 과태료가 부과되고, 서류의 작성·보완·제출 강제 및 전담기관의 확인을 받을 때까지 데이터 이전의 중단 강제 조치가 병과된다(제56.1조 및 제56.6조).
8	다음의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국경 간 개인정보 이전 서류를 업데이트해야 한다(제3호와 동일한 사유): a) 개인정보 이전 또는 처리의 새로운 목적이 발생하는 경우; b) 개인정보 관리자, 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자, 개인정보 처리자, 제3자가 새로 발생하거나 변경되는 경우.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 제22.1조 시행령 356 제20.1조	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이 있음에도 국경 간 개인정보 이전 영향평가 서류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지 않은 경우 3,000만~5,000만 동 of 과태료가 부과된다(제56.1.d조). 전담기관의 점검에 대비하여 서류를 즉시 제공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3,000만~5,000만 동 of 과태료가 부과된다(제56.1.d조).

국경 간 개인정보 이전 서류 (계속)

번호	준수 의무	법적 근거	시행령 330/2026/ND-CP에 따른 처벌 위험
9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즉시 국경 간 개인정보 이전 서류를 업데이트해야 한다(제4호와 동일한 사유): a) 회사가 법령에 따라 재편, 영업 중단, 해산, 파산하는 경우; b)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개인에 관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c) 개인정보 처리 영향평가 서류 또는 국경 간 개인정보 이전 영향평가 서류에 등록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종·직종·서비스가 새로 발생하거나 변경되는 경우.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 제22.2조, 시행령 356 제 20.2조	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이 있음에도 국경 간 개인정보 이전 영향평가 서류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경우 3,000만~5,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56.1.d조). 추가 유의사항: 이전 완료 후 수령자 측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의 연락처 정보를 통지하지 않거나, 수령자가 데이터를 다른 제3자에게 재이전할 때의 통제 체계가 없는 경우 5,000만~1억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56.1.e조 및 제56.1.g조).

개인정보 보호 위반행위 통지

번호	준수 의무	법적 근거	시행령 330/2026/ND-CP에 따른 처벌 위험
10	- 통지가 필요한 경우: (i)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ii) 개인정보가 목적 외로 처리되거나 정보주체와 개인정보 관리자·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자 간의 합의와 다르게 처리된 경우. (iii)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행사된 경우 및 법령이 정하는 기타 경우. ("위반행위") - 통지 의무자: 개인정보 관리자, 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자, 위반행위를 발견한 제3자 - 통지 접수 기관: 개인정보 보호 전담기관 - 서류: 시행령 356 첨부 서식 제08호 제출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위반행위 발견 시, 개인정보가 목적 외 또는 합의와 다르게 처리된 경우, 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 전담기관에 통지하지 않으면 2,000만 ~ 4,000만 동 của 과태료가 부과된다(제54.2조). 국방, 국가안보, 사회질서·안전에 손해를 주거나 줄 수 있거나, 정보주체의 생명·건강·명예·존엄·재산을 침해하는 위반행위를 발견한 후 72시간을 초과하여 통지한 경우 4,000만 ~ 6,000만 동 của 과태료가 부과된다(제54.3조). 개인정보 처리자가 위반행위를 발견하고도 개인정보 관리자에게 적시에 통지하지 않거나, 사고의 성격·규모, 개인정보 유형 및 영향을 받은 정보주체 수에 관한 정보를 고의로 은닉하거나 허위로 제공한 경우 1,000만 ~ 2,000만 동 của 과태료가 부과된다(제54.1.a조 및 제54.1.c조). 시정조치: 내용·형식·기한을 준수한 통지 의무의 완전한 이행 및 증빙자료 제공을 강제한(제54.5.a조).

개인정보 보호 위반행위 통지 (계속)

번호	준수 의무	법적 근거	시행령 330/2026/ND-CP에 따른 처벌 위험
11	회사는 위반행위 발생을 확인하는 조서를 작성하고 전담기관과 협력하여 처리해야 한다.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 제23.2조, 제23.4조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행위 발생을 확인하는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000만 ~ 2,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54.1.b조). 위반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결과를 시정하지 않거나, 위반행위 처리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전담기관과 협력하지 않은 경우 6,000만~8,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54.4.a조 및 제54.4.b조). 시정조치: 전담기관의 요구에 따른 저지 및 결과 시정 조치의 이행을 강제한다(제 54.5.b조).

개인정보 보호 인력 및 부서

번호	준수 의무	법적 근거	시행령 330/2026/ND-CP에 따른 처벌 위험
12	회사가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부서·인력을 지정하는 경우: (i) 지정된 인력은 개인정보 보호 역량 요건("개인 역량")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보유할 것; + 법무, 정보기술, 사이버보안, 데이터 보안, 위험관리, 컴플라이언스, 인사관리, 인력조직 분야 중 하나에서 (졸업 시점부터) 최소 2년의 근무 경력을 보유할 것; + 회사로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지식 및 전문 기술 교육을 받았을 것. (ii)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 인력과 비밀유지 책임 합의를 체결해야 하며, 보호 대상 개인정보에 위반·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책임 면제 사유를 합의할 수 있다. (iii)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 인력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지식·기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 제33.2조; 시행령 356 제 13.5조, 제13.6조	개인정보 보호 인력과 비밀유지 책임 합의를 체결하지 않거나, 인력에게 개인정보 보호 지식·기술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인력 지정 문서·부서 설립 결정에 기능·업무·권한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 경고 또는 1,000만~2,000만 동의를 과태료가 부과된다(제57.1.a조, 제57.1.b조 및 제57.1.c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력(전문대학 미만 학력 또는 법무·정보기술·사이버보안·데이터보안·위험관리·컴플라이언스·인사관리 분야 2년 미만 경력)을 지정하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인력을 지정하거나, 인력 지정 문서·부서 설립 결정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2,000만~3,000만 동의를 과태료가 부과된다(제57.2.a조, 제57.2.b조 및 제57.2.c조). 시정조치: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으로의 교체를 강제하고, 기능·업무를 완비한 지정 문서의 발급 및 증빙자료 제공을 강제한다(제57.3조).

개인정보 보호 인력 및 부서 (계속)

번호	준수 의무	법적 근거	시행령 330/2026/ND-CP에 따른 처벌 위험
13	회사가 외부 조직·개인에게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를 위탁하는 경우: (1) 개인의 경우: (i) 개인은 제12호에 명시된 개인 역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법무, 정보기술, 사이버보안, 데이터 보안, 위험관리, 컴플라이언스, 인사관리, 인력조직 분야에서 최소 2년의 근무 경력;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지식 및 전문 기술 교육 이수. (ii) 정보주체 및 관련 당사자에게 해당 개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iii)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 인력 이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조직의 경우: (i) 서비스 제공 조직의 역량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행령 356 제15.3조, 제16.3조	외주 회사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인력을 지정하는 공식 문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2,000만~3,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57.2.c조).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위반한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은 1,000만~3,000만 동, 조직은 3,000만~5,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서비스 제공을 빌미로 계약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에 접근·수집·이용·공개·처리한 경우 5,000만~1억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58.1조, 제58.2조 및 제58.3조). DEDICA 유의사항: 기업은 계약 체결 전 제공자의 역량을 점검해야 하며, 외주가 기업 자체의 준수 책임을 이전시키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인력 및 부서 (계속)

번호	준수 의무	법적 근거	시행령 330/2026/ND-CP에 따른 처벌 위험
13 (계속)	+ 기관·조직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규정 준수에 관한 자문 및 합의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업무 수행을 위탁받는, 기술·법률 또는 기술·법률 자문 관련 기능·업무·업종·분야를 보유한 조직·기업일 것; + 개인 역량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최소 3명 보유할 것; + 보안, 사이버보안, 정보기술, 표준평가, 개인정보 보호 자문과 관련된 제품·서비스를 제공한 경력이 있을 것. (ii) 정보주체 및 관련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조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iii) 회사는 서비스 이용 계약 및 개인정보 처리 합의를 체결해야 한다.		

정보주체 동의의 수령 및 보관

번호	준수 의무	법적 근거	시행령 330/2026/ND-CP에 따른 처벌 위험
14	- 동의 취득 의무자: 개인정보 관리자, 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자. - 동의 취득 방법: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또는 거부 확인을 요청해야 하며,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허용 동의를 철회할 권리를 가진다: - 서면으로; - 녹음된 통화를 통해;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동의 구문을 통해; - 이메일, 웹사이트, 플랫폼 또는 동의 취득 기술이 마련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 전자적 형태 또는 검증 가능한 형식을 포함하여 인쇄·복사가 가능한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 금지되는 경우: 기본값 동의 방식을 설정하거나, 동의와 비동의 사이에 불명확하거나 오인을 유발하는 안내를 만드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 제4.1.a조, 제4.1.b조 시행령 356 제6.1조, 제6.2조, 제9.2조, 제9.3조, 제9.4조	동의 없이 수집 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무관한 목적의 처리에 동의하지 않을 때 강제 조건을 부과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기본값 동의 방식 또는 오인을 유발하는 안내를 설정하는 경우; 동의 시점·내용을 검증할 수 없거나 불명확한 방식으로 동의를 취득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종류·처리목적·권리와 의무에 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목적별 개별 동의를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동의를 취득하는 경우; 또는 민감정보가 처리되고 있음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 3,000만~5,000만 동의를 과태료가 부과된다(제43.1조). 정보주체의 중단·제한 요청 또는 국가기관의 서면 요청 이후에도 고의로 처리를 계속하거나, 침묵을 동의로 일방적으로 간주한 경우 5,000만~7,000만 동의를 과태료가 부과된다(제43.2조). 부가 제재: 위반행위에 사용된 증거물·수단을 몰수한다(제43.3조). 시정조치: 유효한 동의 없이 수집·처리된 개인정보를 복구 불가능한 수준으로 폐기·삭제하도록 강제하며, 부당이득의 반환을 강제한다(제43.4조).

정보주체 동의의 수령 및 보관 (계속)

번호	준수 의무	법적 근거	시행령 330/2026/ND-CP에 따른 처벌 위험
15	회사는 정보주체의 동의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시행령 356 제6.2조	정보주체의 동의 기록을 기록·보관하지 않거나, 정보주체의 요청 또는 국가기관의 점검 시 동의 취득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3,000만~5,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43.1.g조).

정보주체 권리 행사 요청의 처리

번호	준수 의무	법적 근거	시행령 330/2026/ND-CP에 따른 처벌 위험
16	회사는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위한 명확한 절차, 방법, 서식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 356 제5.1조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위한 명확한 절차·방법·서식을 마련하지 않거나, 관련 부서 간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거나, 정보주체가 권리 행사 절차를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보장하지 않은 경우 1,000만~2,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44.1.a조, 제44.1.b조 및 제44.1.c조).
17	회사는 요청자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개인정보 관련 요청에 대해 기한 내에 응답·처리해야 한다. - 다음의 요청을 접수한 경우 회사는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 (1) 개인정보 처리 허용 동의의 철회, 개인정보 처리의 제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 (2)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또는 정정 요청, 개인정보 제공; (3) 개인정보의 삭제; (4) 개인정보 보호 조치·방안의 이행.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 시행령 356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적법한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일을 초과하여 응답하지 않거나 절차 정보를 불완전하게 제공한 경우, 또는 이행 불가·연장 필요 시 정당한 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1,000만~2,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44.1.d조 및 제44.1.đ조).

정보주체 권리 행사 요청의 처리 (계속)

번호	준수 의무	법적 근거	시행령 330/2026/ND-CP에 따른 처벌 위험
18	개인정보 처리 허용 동의의 철회, 개인정보 처리의 제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 요청(제17호의 요청 (1))에 대해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제3자에게 이행을 요청하는 경우 20일 이내에 이행한다. 이행 기한은 1회에 한해 1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시행령 356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개인정보 관리자, 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자가 동의 철회·제한·이의제기 요청을 15일 이내(제3자 이행 필요 시 20일, 최대 15일 연장 가능)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0만 ~ 4,000만 동 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44.3.a조). 개인정보 처리자, 제3자가 개인정보 관리자가 정한 기한 내에 처리를 중단하지 않은 경우 2,000만 ~ 3,000만 동 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44.2.a조). 동의 철회권 행사를 은닉·저지·방해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후에도 처리를 중단하지 않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 관리자가 개인정보 처리자·제3자에게 처리 중단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2,000만 ~ 3,000만 동 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45.1조). 시정조치: 정보주체의 권리를 완전히 이행하고 증빙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며, 계속 처리된 개인정보의 폐기·삭제를 강제하고, 부당이득의 반환을 강제한다(제44.5조 및 제45.2조).

정보주체 권리 행사 요청의 처리 (계속)

번호	준수 의무	법적 근거	시행령 330/2026/ND-CP에 따른 처벌 위험
19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또는 정정 요청, 개인정보 제공 요청(제17호의 요청 (2))에 대해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제3자에게 이행을 요청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이행한다. 이행 기한은 1회에 한해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열람, 정정 또는 개인정보 제공 요청을 10일 이내(제3자 이행 필요 시 15일, 최대 10일 연장 가능)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0만~4,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44.3.b조). 개인정보 처리자, 제3자가 개인정보 관리자가 정한 기한 내에 개인정보를 정정하거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 2,000만~3,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44.2.b조).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정정하기 위해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허용하지 않은 경우 2,000만~3,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제46.1.a조); 정보가 허위이거나 위조된 것임을 확인한 후에도 정보주체의 명예·존엄·신용·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에서 고의로 지연하거나 정정하지 않은 경우 3,000만~5,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46.2조). 적법한 요청 시 정보주체 본인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한 경우 1,000만~2,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49.1조).

정보주체 권리 행사 요청의 처리 (계속)

번호	준수 의무	법적 근거	시행령 330/2026/ND-CP에 따른 처벌 위험
20	개인정보 삭제 요청(제17호의 요청 (3))에 대해 회사는 2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제3자에게 이행을 요청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행한다. 이행 기한은 1회에 한해 2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20일 이내(제3자 이행 필요 시 30일, 최대 20일 연장 가능)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0만~4,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44.3.c조). 개인정보 처리자, 제3자가 개인정보 관리자가 정한 기한 내에 개인정보를 삭제·폐기 하거나 처리를 제한하지 않은 경우 2,000만~3,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44.2.c조). 시정조치: 적법한 요청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를 완전히 이행하고 관할 기관에 증빙 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제한다(제44.5조).
21	개인정보 보호 조치·방안의 이행 요청(제17호의 요청 (4))에 대해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며, 1회에 한해 1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 조치·방안의 적용 요청을 15일 이내(최대 15일 연장 가능)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0만~4,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44.3.d조). 시정조치: 정보주체의 권리를 완전히 이행하고 이행 증빙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제한다(제44.5조).

개인정보의 삭제, 폐기, 비식별화

번호	준수 의무	법적 근거	시행령 330/2026/ND-CP에 따른 처벌 위험
22	회사는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삭제·폐기하거나 제3자에게 삭제·폐기를 요청해야 한다: - 정보주체가 요청하고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손해를 수용하는 경우 -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완료된 경우; - 법령이 정한 보관 기한이 만료된 경우; - 관할 국가기관의 결정에 따라 이행하는 경우; - 합의에 따라 이행하는 경우;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 제14.1조, 제14.3조	규정된 경우에 개인정보를 삭제·폐기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관리자가 개인정보 처리자·제3자에게 삭제·폐기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3,000만~5,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51.2.a조 및 제51.2.b조). 삭제·폐기가 안전한 방법으로 이행되지 않거나, 삭제·폐기된 데이터에 대한 무단 침입·복구를 저지하는 조치가 없는 경우 1,000만~3,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51.1.b조 및 제51.1.c조). 시정조치: 개인정보를 복구 불가능한 수준으로 폐기·삭제하도록 강제한다(제51.4.a조).
23	정당한 사유로 삭제·폐기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사는 개인정보를 삭제·폐기해서는 안 되며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 제14.2조, 제14.5조	삭제·폐기 요청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1,000만~3,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51.1.a조). 시정조치: 삭제·폐기를 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강제한다(제51.4.b조).

개인정보의 삭제, 폐기, 비식별화 (계속)

번호	준수 의무	법적 근거	시행령 330/2026/ND-CP에 따른 처벌 위험
24	회사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는 기관·조직·개인은 비식별화 과정을 엄격히 통제·감독할 책임을 지며, 비식별화 과정에서의 무단 접근, 복제, 탈취, 유출,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재식별해서는 안 된다.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 제14.6조	엄격한 통제·감독 없이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거나, 비식별화 과정에서의 무단 접근·복제·탈취·유출·손실을 방지하는 조치가 없는 경우 1,000만~3,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51.1.d조 및 제51.1.đ조). 비식별화 과정에서 무단 접근·복제·탈취·유출·손실이 발생한 경우 3,000만~5,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51.2.d조).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재식별한 경우 5,000만~6,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51.3.b조). 시정조치: 통제·감독 및 무단 접근 방지 조치의 적용을 강제하며, 재식별 결과의 폐기·삭제를 강제한다(제51.4.c조 및 제51.4.d조).

회사 내 부서 간 개인정보 공유

번호	준수 의무	법적 근거	시행령 330/2026/ND-CP에 따른 처벌 위험
25	회사는 개인정보의 공유·이용을 규정에 맞게 통제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 356/2025/ND-CP 제7.4조	동일 기관·조직 내 부서 간 개인정보를 공유하면서 규정에 맞는 공유·이용 통제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 2,000만~3,000만 동 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52.1.b조). 시정조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이전 합의서를 보완·완비하고 증빙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제한다(제52.5.a조).
26	회사는 내부 인력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유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내부 인력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유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가 없는 경우 2,000만~3,000만 동 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52.1.b조).

개인정보 제공

번호	준수 의무	법적 근거	시행령 330/2026/ND-CP에 따른 처벌 위험
27	회사는 법령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제3자에게 그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 제15.2.b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다른 기관·조직·개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2,000만 ~ 3,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49.2조). 제공된 데이터가 민감정보인 경우 과태료는 2배인 4,000만 ~ 6,000만 동으로 부과된다(제49.3조). 시정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제공된 개인정보의 회수를 강제하며,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강제한다(제49.4.b조 및 제49.4.c조).

개인정보 공개

번호	준수 의무	법적 근거	시행령 330/2026/ND-CP에 따른 처벌 위험
28	회사는 구체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공개 범위와 공개되는 개인정보의 종류는 그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 제16.1조	구체적인 목적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공개 목적에 필요한 범위·종류를 초과하여 공개한 경우 2,000만~3,000만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50.1.a조 및 제50.1.b조). 시정조치: 구체적인 목적 없이 또는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공개된 개인정보의 삭제·회수를 강제한다(제50.3.d조).
29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공개한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법령에 따라 이행하는 경우; - 긴급 상황 해결을 위한 경우; 국가비상사태 선포에는 이르지 않으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 폭동·테러의 예방·대응, 범죄 및 법령 위반의 예방·대응을 위한 경우; -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 제16.2조.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한 경우 3,000만~5,000만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50.2.b조). 시정조치: 공개된 개인정보의 삭제·회수를 강제한다(제50.3.b조).
30	회사는 정확하고 출처에 부합하며 적법한 접근·이용에 편리하도록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 제16.1조	공개된 개인정보가 원본 데이터 출처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은 경우 2,000만~3,000만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50.1.c조). 시정조치: 정보의 정정을 강제한다(제50.3.a조).

개인정보 공개 (계속)

번호	준수 의무	법적 근거	시행령 330/2026/ND-CP에 따른 처벌 위험
3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적법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웹사이트, 정보포털 또는 대중매체에 데이터를 게시; - 법령이 정하는 기타 방식.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 제16.2조.	법령상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개인정보를 공개한 경우 2,000만 ~ 3,000만 동 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50.1.a조). 시정조치: 공개된 개인정보의 삭제·회수를 강제한다(제50.3.d조).
32	회사는 자신의 역량과 여건 범위 내에서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 이용, 유출, 복제, 수정, 삭제, 폐기 또는 기타 무단 처리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공개 목적·범위 준수를 위한 엄격한 통제·감독을 하지 않거나, 공개된 데이터에 대한 무단 접근·이용·유출·복제·수정·삭제·폐기 또는 기타 무단 처리 행위를 방지하는 조치가 없는 경우 2,000만 ~ 3,000만 동 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50.1.d조 및 제50.1.d조). 시정조치: 공개 중인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감독·보안 조치의 적용을 강제하며 이행 증빙자료를 제공한다(제50.3.c조).

개인정보 이전

번호	준수 의무	법적 근거	시행령 330/2026/ND-CP에 따른 처벌 위험
33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다: a)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b) 확립된 처리 목적에 부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해 동일 기관·조직 내 부서 간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c) 기관·조직·행정단위의 분할·분리·합병 및 국영기업의 재편·소유 형태 전환의 경우, 단위·조직의 분할·분리·합병·통합·활동종료의 경우, 또는 다른 단위·조직의 활동종료를 기초로 신설되는 단위·조직의 경우에 개인정보 처리를 계속하기 위해 이전하는 경우; d) 개인정보 관리자, 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자가 규정에 따른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자·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d) 관할 국가기관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e) 특별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 제17.1조	허용된 경우를 벗어나 재산 또는 기타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위법한 매매로 간주되며, 부당이득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액이 30억 동 미만인 경우 최대 30억 동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제53.1.a조 및 제53.2조). 부가 제재: 위반행위에 사용된 증거물·수단을 몰수한다(제53.4조). 시정조치: 모든 저장 시스템에서 위법하게 매매된 개인정보 전체의 폐기·삭제를 강제하며, 부당이득의 반환을 강제하고, 영향을 받은 모든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강제한다(제53.5조).

개인정보 이전 (계속)

번호	준수 의무	법적 근거	시행령 330/2026/ND-CP에 따른 처벌 위험
34	제33호에 명시된 경우(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분할·분리·합병·재편·국영기업 소유형태 전환 시 처리를 계속하기 위한 이전인 경우; 개인정보 관리자·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자가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자·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이전의 경우, 회사는 다음 내용을 명시한 개인정보 이전 합의를 체결해야 한다: a) 개인정보 이전의 목적; b) 이전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주체 대상 및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종류; c) 개인정보 처리 기간, 이전 목적 완료 후 개인정보의 삭제·폐기 요건; d) 개인정보 이전의 법적 근거; đ) 이전·처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 e) 정보주체의 권리 이행 책임;	시행령 356 제7.1조	개인정보 이전 합의서에 이전·처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 정보주체의 권리 이행 책임, 위반행위 발견 시 협력·준수 책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2,000만~3,000만 동 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52.1.a조). 가중 처벌: 유상 이전임에도 이전 합의서가 없거나, 합의서에 이전 목적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합의된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의 위법한 매매와 동일하게 부당이득의 2배 이상 10배 이하, 최대 30억 동 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53.1.b조 및 제53.1.c조). 시정조치: 규정에 따라 이전 합의를 보완·완비하고 증빙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제한다(제52.5.a조).

개인정보 이전 (계속)

번호	준수 의무	법적 근거	시행령 330/2026/ND-CP에 따른 처벌 위험
34 (계속)	g)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 발견 시 당사자 간 협력·준수 책임.		
35	민감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은 추가 보안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 저장·전송 장비에 대한 물리적 보안 조치; - 암호화 조치; - 개인정보의 익명화; 및 - 이전 과정에서의 기타 보안 조치.	시행령 356 제7.2조	저장·전송 장비에 대한 물리적 보안 조치, 암호화 조치, 개인정보 익명화 및 이전 과정에서의 기타 보안 조치 없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이전한 경우 5,000만~8,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52.3조). 시정조치: 저장·전송 중인 민감정보에 규정에 따른 보안 조치를 적용하도록 강제하며, 보안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이전된 민감정보의 폐기·삭제를 강제한다(제52.5.b조 및 제52.5.c조).
36	회사는 데이터 거래소에서 거래하기 전에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야 한다.	시행령 356 제7.5조	유상 이전 활동의 일환으로 데이터 거래소에서 거래할 때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의 위법한 매매와 동일하게 처벌되며, 부당이득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당이득이 없는 경우 정보주체 수에 따라 7,000만 동 ~ 10억 동, 최대 30억 동 of 과태료가 부과된다(제53.1.e조, 제53.2조 및 제53.3조). 부가 제재: 위반행위에 사용된 증거물·수단을 몰수한다(제53.4조).

유상 개인정보 이전

번호	준수 의무	법적 근거	시행령 330/2026/ND-CP에 따른 처벌 위험
37	회사는 정보주체가 이전 건별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동의(목적, 수령자, 처리자를 명시)할 수 있도록 기술 체계 및 투명한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 356 제7.3조	목적과 수령·처리 조직을 명확히 알고 이전 건별로 정보주체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체계·투명한 메커니즘 없이 유상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한 경우, 개인정보의 위법한 매매와 동일하게 부당이득의 2배 이상 10배 이하, 최대 30억 동 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53.1.d조, 제53.2조 및 제53.3조).
38	회사는 동의받은 이전 목적에 맞게, 등록된 업종·직종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한다.		유상 이전 시 정보주체가 동의한 이전 목적에 맞지 않게 처리하거나, 등록된 업종·직종에 부합하지 않게 처리한 경우, 개인정보의 위법한 매매와 동일하게 부당이득의 2배 이상 10배 이하, 최대 30억 동 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53.1.d조, 제53.2조 및 제53.3조). 시정조치: 개인정보 전체의 폐기·삭제를 강제하며, 부당이득의 반환을 강제하고, 영향을 받은 모든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강제한다(제53.5조).

유상 개인정보 이전 (계속)

번호	준수 의무	법적 근거	시행령 330/2026/ND-CP에 따른 처벌 위험
39	회사는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종류를 이전 목적의 범위 내로 제한해야 한다.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종류를 이전 목적 범위 내로 정하지 않거나 제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전 목적에 맞는 보관 기한을 정하지 않거나 목적 완료 시 개인정보를 삭제·폐기하지 않은 경우 3,000만~5,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52.2.b조 및 제52.2.c조). 부가 제재: 위반행위에 사용된 증거물·수단을 몰수한다(제52.4조).
40	회사는 당사자(관리자, 처리자, 제3자)의 역할을 명확히 정하고, 이행 전에 개인정보 이전·처리 합의를 체결하며, 정보주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개인정보 이전 활동에서 개인정보 관리자, 개인정보 처리자, 제3자의 역할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경우 3,000만~5,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52.2.a조). 부가 제재: 위반행위에 사용된 증거물·수단을 몰수한다(제52.4조). 시정조치: 규정에 따른 보안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이전된 개인정보의 폐기·삭제를 강제한다(제52.5.c조).

특별한 경우의 개인정보 처리

번호	준수 의무	법적 근거	시행령 330/2026/ND-CP에 따른 처벌 위험
41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 절차·규정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 제19.2조	개인정보 처리 절차·규정을 마련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책임을 정하지 않은 경우 1,000만~2,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47.1.a조). 시정조치: 개인정보 처리 절차·규정의 수립·공포·공개를 강제하고 이행 증빙자료를 제공한다(제47.4.a조).
42	회사는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시행하지 않아 수집된 개인정보의 유출·손실이 발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00만~3,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47.2.a조 및 제47.2.b조). 시정조치: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시행 및 위험평가 실시를 강제하고 이행 증빙자료를 제공한다(제47.4.d조).
43	회사는 법령 및 자사의 개인정보 처리 절차·규정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야 한다.		법령 및 개인정보 처리 절차·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2,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47.1.b조). 시정조치: 규정에 맞는 개인정보 처리 절차·규정의 수립·공포·공개를 강제하고 증빙자료를 제공한다(제47.4.a조).

특별한 경우의 개인정보 처리 (계속)

번호	준수 의무	법적 근거	시행령 330/2026/ND-CP에 따른 처벌 위험
44	회사는 관련 당사자로부터의 의견·건의를 접수·처리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관련 기관·조직·개인으로부터의 의견·건의를 접수·처리하는 체계가 없는 경우 1,000만~2,000만 동외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47.1.c조). 시정조치: 규정에 맞는 의견·건의 접수 체계의 수립을 강제하고 이행 증빙자료를 제공한다(제47.4.a조).

금지행위

번호	준수 의무	법적 근거	시행령 330/2026/ND-CP에 따른 처벌 위험
45	회사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항하거나, 국방·국가안보·사회질서·안전, 기관·조직·개인의 적법한 권리·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허위·왜곡·선동 정보를 조작·강화·유포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안보·질서 침해 목적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이전·유포·공개하는 행위; 또는 기관·조직의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개인정보를 변조·왜곡·삭제·폐기·탈취하거나 처리를 방해하는 행위 등 안보·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보 처리행위에는 3,000만~5,000만 동 của 과태료가 부과된다(제41.1조). 부가 제재: 위반행위에 사용된 증거물·수단을 몰수한다(제41.2조). 시정조치: 개인정보의 폐기·삭제를 강제하며, 부당이득의 반환을 강제하고, 위법하게 제공·이전·공개된 정보와 개인정보의 삭제·회수를 강제한다(제41.3조).
46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기관·조직·개인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저항·방해하는 행위에는 4,000만~6,000만 동 của 과태료가 부과된다(제39.2.a조).

금지행위 (계속)

번호	준수 의무	법적 근거	시행령 330/2026/ND-CP에 따른 처벌 위험
47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빌미로 법령 위반행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 제7.3조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명목으로 법령 위반행위를 은닉·정당화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인력·수단·조치를 악용하여 개인정보를 탈취·왜곡·위법 처리하는 행위;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이용하여 사기를 치거나 적법한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악용하는 행위에는 3,000만~5,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40.1조). 부가 제재: 위반행위에 사용된 증거물·수단을 몰수한다(제40.2조). 시정조치: 위법하게 탈취·처리된 개인정보의 폐기·삭제를 강제하며, 부당이득의 반환을 강제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주체에 대한 공개 사과를 강제한다(제40.3조).

금지행위 (계속)

번호	준수 의무	법적 근거	시행령 330/2026/ND-CP에 따른 처벌 위험
48	회사는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거나 동의·합의된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또는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거나 오류 발견 시 적시에 정정·업데이트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위반행위 처리에 있어 관할 기관과 능동적으로 예방·발견·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2,000만~4,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39.1조). 부가 제재: 위반행위에 사용된 증거물·수단을 몰수한다(제39.3조). 시정조치: 정해진 범위·목적을 벗어나 처리되었거나 보관 기한을 초과한 개인정보의 폐기·삭제를 강제하며, 부당이득의 반환을 강제하고, 정확성을 위한 개인정보의 정정·업데이트·보완을 강제한다(제39.4조).

금지행위 (계속)

번호	준수 의무	법적 근거	시행령 330/2026/ND-CP에 따른 처벌 위험
49	회사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법령 위반행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법령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4,000만~6,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39.2.b조). 부가 제재: 위반행위에 사용된 증거물·수단을 몰수한다(제39.3조). 시정조치: 부당이득의 반환을 강제하며,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주체에 대한 공개 사과를 강제한다(제39.4.b조 및 제39.4.c조).

금지행위 (계속)

번호	준수 의무	법적 근거	시행령 330/2026/ND-CP에 따른 처벌 위험
50	회사는 법령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개인정보를 매매해서는 안 된다.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 제7.6조	본 시행령상 가장 무거운 처벌. 개인정보의 위법한 매매로 얻은 부당이득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53.1조 및 제53.2조). 부당이득이 없는 경우: 기본 데이터 1,000명 미만 또는 민감정보 200명 미만인 경우 7,000만~1억 동;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또는 민감정보 200명 이상 400명 미만)인 경우 1억~3억 동; 2,000명 이상 10,000명 미만(또는 민감정보 400명 이상 2,000명 미만)인 경우 3억~5억 동; 10,000명 이상(또는 민감정보 2,000명 이상)인 경우 5억 동~10억 동; 국방·안보질서·대외관계·거시경제 또는 생명·건강·명예·존엄·재산 침해한 경우 10억~30억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53.3조). 부가 제재: 위반행위에 사용된 증거물·수단을 몰수한다(제53.4조). 시정조치: 모든 저장 시스템에서 위법하게 매매된 개인정보 전체의 폐기·삭제를 강제하며, 부당이득의 반환을 강제하고, 영향을 받은 모든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강제한다(제53.5조).

금지행위 (계속)

번호	준수 의무	법적 근거	시행령 330/2026/ND-CP에 따른 처벌 위험
51	회사는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고의로 유출·손실시켜서는 안 된다.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 제7.7조	기관·조직의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처리를 방해한 경우 3,000만~5,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41.1.c조).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시행하지 않아 수집된 개인정보의 유출·손실이 발생한 경우 2,000만~3,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47.2.a조). 유의사항: 개인정보의 유출·손실은 72시간 내 통지 의무도 함께 발생시키며, 통지하지 않거나 지연 통지한 경우 최대 6,000만 동의 추가 과태료가 부과된다(제54.2조 및 제54.3조).
52	회사는 삭제·폐기된 개인정보를 고의로 위법 복구해서는 안 된다.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 제14.4조	삭제·폐기된 개인정보를 고의로 위법 복구한 행위에는 5,000만~6,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51.3.a조). 시정조치: 위법하게 복구된 데이터를 복구 불가능한 수준으로 폐기·삭제하도록 강제한다(제51.4.c조).
53	회사는 법령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재식별해서는 안 된다.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 제14.6.b조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재식별한 행위에는 5,000만~6,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51.3.b조). 시정조치: 재식별 결과를 복구 불가능한 수준으로 폐기·삭제하도록 강제한다(제51.4.c조).

금지행위 (계속)

번호	준수 의무	법적 근거	시행령 330/2026/ND-CP에 따른 처벌 위험
54	회사는 공개가 정보주체의 적법한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 제16.1조	정보주체의 적법한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한 행위에는 3,000만~5,000만 동 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50.2.a조). 시정조치: 공개된 개인정보의 삭제·회수를 강제한다(제50.3.b조).

제재 체계 개요

제재 적용 방식에 관해 알아야 할 3가지

공소시효 1년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분야 행정제재의 공소시효는 1년이다. 공소시효 산정을 위한 위반행위 종료 시점은 조직·개인이 규정된 의무를 완료한 날 또는 관할 기관이 위반행위의 실제 종료를 확인한 날이다.

DEDICA 유의사항: 서류 작성, 동의 기록 보관, 개인정보 보호 담당 인력 지정과 같은 지속적 성격의 의무는 기업이 그 의무를 완료해야 비로소 위반행위가 종료되므로, 실질적인 공소시효는 그 시점부터 기산된다.

근거: 시행령 330/2026/NĐ-CP 제3.1조 및 제3.2조

부가 제재

과태료 외에도 기업은 개인정보 처리 서비스업 조건충족 인증서 및 위반이 발생한 업종·직종에 관한 영업허가증·자격증을 포함하여 1개월~24개월간 허가·자격증 사용권을 박탈당할 수 있고; 1개월~24개월간 영업을 정지될 수 있으며; 위반행위에 사용된 증거물·수단이 몰수될 수 있고; 행정위반을 저지른 외국인은 추방될 수 있다.

DEDICA 유의사항: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외국인 추방 및 영업정지는 재무적 위험과 별도로 평가되어야 할 위험이다.

근거: 시행령 330/2026/NĐ-CP 제4.2조 및 제4.3조

경과규정

2026년 8월 19일 이전에 발생하였으나 그 이후에 적발되거나 심리·처리 중인 위반행위에는 해당 행위 시점에 시행 중이던 제재 시행령이 적용된다. 다만 시행령 330/2026/NĐ-CP가 해당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규정하지 않거나 더 가벼운 법적 책임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330/2026/NĐ-CP를 적용한다.

DEDICA 유의사항: 미이행 의무는 계속 진행 중인 행위로 간주되므로, 기업은 2026년 8월 19일 이전부터 남아 있는 미비 사항을 점검하고 시정해야 한다.

근거: 시행령 330/2026/NĐ-CP 제81.1조

문의하기

DEDICA의 변호사 및 법률 전문가 팀이 언제든지 도와드립니다. 심도 있는 법률 자문과 서비스를 위해 지금 문의하세요.

기업 및 투자
형사

상시 법률 자문
인수·합병(M&A)

분쟁 해결
상표 및 저작권



주소

호치민시 쑤언호아동 하이바쯔 171번지 A&T 빌딩
11층



전화

+84 39 969 0012



이메일

david@dedica-law.com



웹사이트

www.dedica-law.com



지금 전화하시거나 메시지를 남겨 상담을 받으세요.